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1496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12월 21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“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(의안번호: 1361호),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“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(의안번호: 1382호),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 3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일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는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조에서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등 의회의 의정활동원칙을 규정하고 있음.
- 한편,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당선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.
- 두 개정안은 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 제3조제3항 중 “의원들”에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는 등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, 이를 병합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 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함(안 제3조제3항).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, 「공직선거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기타 사항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의원들”을 “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의회의 의정활동원칙) ① · ② (생 략) ③ 의회는 소속 <u>의원들이</u>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의회의 의정활동원칙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의원(「공직선거법」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들</u>----- -.</p>